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99
----------	-----

2024. 10. 14.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2024. 9. 30. 김영권 의원 등 8인
- 제3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2024. 10. 14.)
“원안가결”

2. 제안이유(제안설명: 김영권 의원)

2024년 9월부터 새로이 시행 중인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원금이 실제 소득으로 반영되어 자격 등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실제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그 조건을 충족시키고자 지원 대상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원 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1호라목 신설)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구경남)

가. 조례개정 취지

- 본 안건은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실제소득에 반영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김영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임.

나. 검토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¹⁾에서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제6조의3 규정에서는 실제소득,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²⁾에 대한 규정을 대통령으로 위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³⁾에서는 소득으로 보지 않은 경우를 같은 항 제3호에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2)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202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에는 실제 소득에서 제외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은 다음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하고 있음.

<*202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p103)>

▶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제2항]

다)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 다음의 3가지 특징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 (1) 조례에 지원 대상이 수급자나 저소득주민으로 명시
 - 저소득주민은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민” 등과 같이 선정기준이 조례에 명시되어야 함.
- (2) 동 금품의 조성을 위한 예산이 100% 지자체의 부담인 사업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할 것

- 첫째 및 둘째 조건은 명시적으로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나 셋째 조건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에서 정하는 생계급여의 부가서비스에 포함되는지 살펴보면 그 사례로 첫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1항4)에 생계급여를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포함하고 둘째, 청소년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은 교육급여의 부가서비스로 지원하며 셋째,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산정⁵⁾에도 교통비 항목이 포함되어 부가서비스에 해당된다고 보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5)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최저생계비를 구성하는 생활비 항목

여짐. 따라서 교통비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경우 교통비 지원금이 실제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가 감액되거나 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입법의도에 부합한 것으로 보여짐.

- 현재 우리 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총 13,162명으로 파악됨. 다만, 지원대상 중 실제 시내버스 이용자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제도 시행 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교통비 지원대상>

구분	6세~18세	30세~39세	65세 이상	계
수급자	1,152명	2,035명	7,660명	10,847명
차상위계층	906명	224명	1,185명	2,315명
합계	2,058명	2,259명	8,845명	13,162명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에서는 제1호라목에 “제1호 각 목의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라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교통비 지원대상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포함되어 있을 시 지원받은 사항이 대상자의 소득(재산)으로 산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수급자격 탈락 또는 급여 감액 등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는 적절하다고 보여짐.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식료품비(37.7%), 주거비(15.8%), 교통·통신(10.2%), 광열수도(7.4%), 일상소모품(5.9%), 보건 의료(4.5%), 피복신발(4.1%)

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를 실재소득에서 제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의원입법을 통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부서간의 협의와 검토가 부족한 결과로 향후에는 집행부가 안건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관련부서 상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99
----------	-----

발의연월일 : 2024. 9. 30.

발 의 자 : 김영권·전인수·한윤수·
오온누리·이향숙·우종혁·
안지연·노애자 의원
(이상 8인)

1. 제안이유

2024년 9월부터 새로이 시행 중인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원금이 실제 소득으로 반영되어 자격 등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실제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그 조건을 충족시키고자 지원 대상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 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1호라목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1호 각 목의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어르신 등”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em;">가. ~ 다. (생략)</p> <p><신설></p> <p>2. ~ 5.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 ----- ----- ----- --.</p> <p style="padding-left: 2em;">가. ~ 다.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em;">라. <u>제1호 각 목의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u></p> <p>2. ~ 5. (현행과 같음)</p>